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9. 20 선고 2022가단2218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

담당변호사 임경

피고(선정당사자) B

변 론 종 결 2022. 8. 16.

판 결 선 고 2022. 9. 20.

주 문

1. 피고(선정당사자)와 망 C 사이에 2020. 7. 27.자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피고(선정당사자)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20. 8. 6. 접수 제23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선정자 D는 피고(선정당사자)에게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22. 1. 6. 접수 제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피고(선정당사자)에게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22. 3. 24. 접수 제9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5. 소송비용은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

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자백간주 내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(선정당사자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와 망 C 사이에 2020. 7. 27.자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)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)을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주문 제2 내지 4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.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와 관련하여 원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은 원래 망 C의 소유였는데 피고에게 증여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으로서 증여계약의 형태로 망 C에게 회복시켜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.

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안홍준

선 정 자 명 단

1. B(선정당사자)
2. D
3. E. 끝.

목록(부동산의 표시)

1. 충청남도 논산시 대 20㎡
2. 충청남도 논산시 대 18㎡

청 구 원 인

1. 사해행위 취소

가. 피보전채권

1) 보험계약체결

원고는 보증보험, 신용보험 등 보험업법상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, 피고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의 1 대출거래약정서, 갑 제1호증의 2 추가약정서).

보험계약자 : B

피보험자 : 주식회사 F

보험가입금액 : 16,000,000원

보험기간 : 2018. 10. 5.부터 2023. 10. 5.까지

보증내용 :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

2) 보험사고발생 및 보험금 지급

피보험자인 F 은 피고 B 의 원리금 연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20. 6. 2

5.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20. 7. 20. 보험금 12,847,392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(갑 제2호증 보험금청구서, 갑 제3호증 입금확인증).

3) 소결

따라서 피고 B 은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, 2022. 3. 22.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14,748,100원입니다(갑 제4호증 지연손해금 산출내역).

나. B 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

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(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).

피고 B는 원고가 피보험자인 F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주일만인 2020. 7. 27. 자기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합니다)을 부친인 망 C에게 증여하고 며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B의 사해의사나 C의 악의도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(갑 제5호증의 1,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).

다. C의 승계인들과 피고 D 사이의 전속행위

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수익자인 C은 2020. 7. 27. 사망하였고(이하 '망인'이라고 합니다),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, E, D가 망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. 그 이후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제1부동산'이라 합니다)을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통하여 피고 D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(갑 제5호증의 1 참조).

라.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상속대위등기

충남신용보증재단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제2부동산'이라 합니다)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(갑 제5호증의 2 참조).

2. 원상회복

피고들은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할 것인바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20. 8. 6. 접수 제23172호로 마친,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22. 3. 24. 접수 제915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,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22. 1. 6. 접수 제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이와 같이 피고 B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고,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망인의 승계인인 피고들과 전속자인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